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항공산업 발전조합의 설립 근거가 마련(「항공사업법」 개정, '22.1.18. 공포, '22. 7.19. 시행)됨에 따라 조합의 설립·운영을 위한 설립인가 절차, 정관, 사업,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합 설립인가 절차(안 제32조의2)

조합원 범위에 항공사업자 이외에 한국·인천공항공사와 항공우주산업 사업자(항공제조부품업체)를 포함하며, 조합 설립을 위하여 한국·인천 공항공사 중 1인을 포함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업자(법인)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나. 조합의 사업 (안 32조의4)

조합원의 비용절감 등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임대사업, 구매알선, 조합원 교육·훈련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조합의 운영규정(안 제32조의5)

운영규정에 보증·융자·투자 사업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명시하고, 조합이 조합원에 제공 가능한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

액의 30배 이내로 한정

라. 운영위원회(안 제32조의7)

항공조합은 조합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총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마. 기본재산의 구성(안 제32조의8)

조합원의 출자·출연금뿐만 아니라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여객 공항사용료 5% 금액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합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토록 명시

바. 책임준비금 계상(안 제32조의9)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조합원에 대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마련토록 규정

사. 조합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치 (안 제32조의10)

조합의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은 조합의 재무 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2. 4. 20. ~ 5. 30.)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중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설립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③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을 인가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 (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용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의4 (조합의 사업) 법 제6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의 항공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장비의 설치 및 이용, 조합 시설에 대한 임대사업
2. 조합원의 항공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조합원의 업무에 필요한 구매알선
3.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의 교육·훈련 지원
4. 조합원 자산 매입 후 임대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
5.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향상 등을 위한 지원
6.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써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32조의5 (운영규정) ① 법 제69조의4 제3항에 따라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범위와 내용, 보증의 한도, 수수료,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6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범위, 투자대상, 방법 등 투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법 제6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용자사업의 범위, 계약 내용 및 이

자율 등 용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가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조합은 제2항의 한도 내에서 종류별 보증한도(이하 “종류별 한도”라 한다)를 정하고,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조합이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종류별 한도를 정한 뒤 그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2조의6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 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

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의7 (운영위원회) ① 법 제69조의5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가. 공제조합 또는 항공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나.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항공사업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라.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항공협회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2조의8 (기본재산의 구성) ① 법 제69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여객공항사용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제32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제32조의9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법 제69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은 보증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② 법 제69조의8제1항에 따라 조합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③ 조합이 제1항의 책임준비금 또는 제2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 및 그 산정 근거를 통보하여야한다.

제32조의10 (조합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10제3항에 따라 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2.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집행방법의 변경
4. 이익배당의 제한
5. 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 설정
6.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등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10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제32조의11 (수수료·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조합은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수료, 이자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의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합은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2조의2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중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설립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③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 설>

④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을 인가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 (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용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32조의4 (조합의 사업) 법 제6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의 항공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장비의 설치 및 이용, 조합시설에 대한 임대사업
2. 조합원의 항공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수량 등에 관한 조사, 조합원의 업무에 필요한 구매알선
3.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의 교육·훈련 지원
4. 조합원 자산 매입 후 임대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
5.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

<신 설>

발·향상 등을 위한 지원

6.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써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32조의5 (운영규정) ① 법 제69조의4제3항에 따라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범위와 내용, 보증의 한도, 수수료,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6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범위, 투자대상, 방법 등 투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법 제6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융자사업의 범위, 계약 내용 및 이자율 등 융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

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가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조합은 제2항의 한도 내에서 종류별 보증한도(이하 “종류별 한도”라 한다)를 정하고,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조합이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

<신 설>

을 제공할 수 있는 종류별 한도를 정한 뒤 그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2조의6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 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32조의7 (운영위원회) ① 법 제69조의5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가. 공제조합 또는 항공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나.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항공사업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라.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 한국항공협회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신 설>

<신 설>

- 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의8 (기본재산의 구성) ① 법 제69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여객공항사용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제32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 제32조의9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① 법 제69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은 보증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

<신 설>

- 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 ② 법 제69조의8제1항에 따라 조합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 ③ 조합이 제1항의 책임준비금 또는 제2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 및 그 산정 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의10 (조합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10제3항에 따라 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 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2.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

<신 설>

- 지, 집행방법의 변경
4. 이익배당의 제한
 5. 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 설정
 6.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등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10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 제32조의11 (수수료·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조합은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신 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수수료, 이자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의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합은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